
2014년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좌지원 추진계획(안)

2013. 11.

**한 국 발 명 진 흥 회
지식재산인력양성팀**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추진 방향	2
III. 관리·운영계획	4
1. 추진절차	4
2. 주관대학의 사업운영	6
2. 사업 실적보고 및 평가	8
IV. 소요예산 및 사업 추진체계	9
V. 추진 일정	10

I . 추진 배경

□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나아가 실무 중심의 창의적 인재양성

- 기존의 대학(원) 지식재산 교육은 학제 간 교류 정도가 낮고 이론 중심이나, 실무에서는 학제 간 벽을 뛰어넘는 문제 해결 능력 필요
 - 특허출원·조사분석 등 단편적 실무기술 획득 외에 복합적 상황 (신제품 개발, 사업화 등)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재산 교육 미흡
- ⇒ 지식재산 중심의 다학제간 융합교육으로 신사업 창출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 필요

< 기존의 교육과 지식재산 융합교육 비교 >

구분	기존의 지식재산 교육	지식재산 융합교육
개요	지식재산 강좌개설을 희망하는 단일 학과에 전문강사(온라인)의 강의지원	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팀으로 프로젝트 진행 및 전공별 전문가의 강의지원
내용	특허제도에 대한 이해 및 선행기술검색 등 지식재산 관련 이론 강의 중심	기술적 문제발굴, 해결방안 모색,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 등 실습 중심
학제 간 교류정도	낮음	높음
학습기간	1주~16주	16주 이상
실무활용도	낮음	높음
교육결과	없음	지재권 창출, 창업/기술이전 등

□ 한국형 지식재산 융합교육 모형 확립

- 2013년 지식재산 중심의 다학제간 융합교육 시범운영의 결과 환류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좌를 지원하여 한국형 지식재산 융합교육 모형 확립

◆ 다학제 지식재산 융합교육을 지원하여, 아이디어 발굴 및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지식재산 창출 경험을 통한 “실무형 창의인재 양성” 지원

II. 추진 방향

□ 지원 목적

- 지식재산 중심의 다학제간 융합교육을 지원하여 신사업 창출 등 복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

□ 지원 내용

- 지원 대상: 2014년 1학기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좌 운영이 가능한 대학(원)
 - * 지원제외 대상
 - 교육부 지정 '14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,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
 - 대학(원)생 30명 미만이 수강하는 강좌
- 지원 규모: 대학(원) 3개 강좌 선정, 강좌 당 3천만원 이내 지원
 - * 단,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규모 및 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
- 지원 조건
 - 지식재산 중심의 융합교육 강좌를 개설·운영할 수 있는 국내 대학(원)
 - 정규학점이 인정되는 최소 1개 강좌 이상 개설·운영
 - 공학계열을 포함하여 최소 4개 이상의 수강생 다학제 융합교육 진행
 - 강좌 종료 시점에서 최소 6건 이상의 지재산(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 등) 출원 및 3건 이상의 시작품 제작
 - 기타 특화된 우수 지식재산 융합교육 모형 창출 및 확산

< 지식재산 융합교육 과정안 >

과정명	학기	교육내용	교육대상
지식재산 융합교육 과정	1학기 (16주)	- 기업가 정신 - 프로젝트 선정 및 팀 미팅 - 시장 및 요구분석 - 개념 설계 - 선행기술조사 및 전자 출원 - 디자인, 경영 등 초청 강연 - 특허 멘토링 - 시제품 제작 - 최종 프로젝트 발표	4개 이상의 학과간 융합교육이 가능한 대학(원) 강좌

□ 사업비 지출항목

○ 정부지원금 주요 사용항목

- 외부 전문강사 특강비, 강좌보조원 인건비, 시작품 제작비
- 강좌운영비 및 연구활동비

○ 주관대학 대응투자 주요 사용항목

- 참여교수 인건비, 교육시설 임대료, 장비 사용료, 특허검색 유료 DB 사용료 등

□ 선정 추진절차(안)

사업공고	사업개요,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안내	‘13. 11. 18
↓		
신청·접수	강좌지원 희망 대학(원) 신청 수행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접수	‘13. 12. 12 까지
↓		
선정심사	지원 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선정심의	‘13. 12. 17(예정)
↓		
선정결과 발표	지식재산 융합교육 지원 대학 선정결과 발표	‘13. 12. 24(예정)
↓		
협약 체결	선정된 대학 협약 체결	‘14. 1

□ 선정 평가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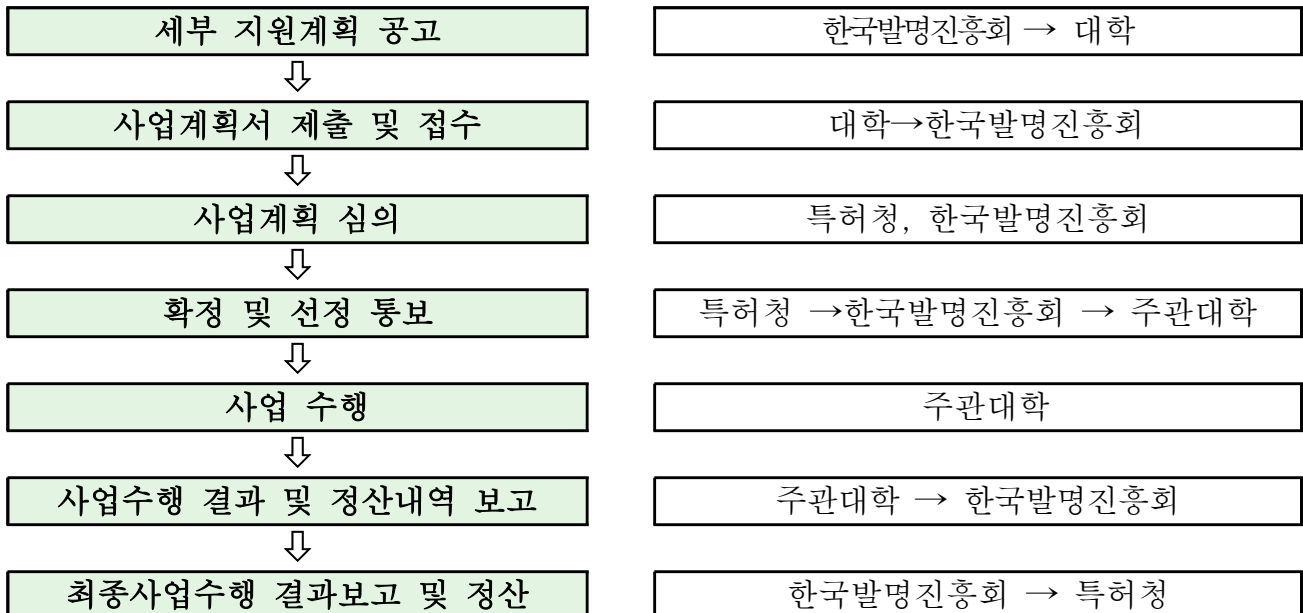
평가영역	평가내용	배점
최근 3년간 지식재산 교육 및 활동실적 (20%)	① 지식재산 정규강좌 개설실적	5
	② 지식재산 실전대회 참여 및 수상실적	5
지식재산 융합교육 강좌운영 계획 (70%)	⑤ 융합교육 교수(강사)진 구성 및 인력운영	10
	⑥ 지식재산 융합교육 특화 강좌편성의 구체성	30
	⑦ 산학협력 연계 체계 구축 여부	15
	⑧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방안	15
	⑨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방안	10
지원금 집행계획 (10%)	⑩ 지원금 집행계획의 적절성	5
	⑪ 대응투자 규모 및 내용의 적절성	5
합 계		100

Ⅲ. 관리·운영계획

1

추진절차

□ 사업 추진절차



○ 공고 방법

- 한국발명진흥회는 신청자격, 지원 주요내용, 접수처, 신청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공고
- 공고방법은 특허청·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등에 인터넷 공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신문 공고 등을 할 수 있음

○ 신청 자격요건

-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국내 대학(원)으로 공학계열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다학제 수강생 대상 융합교육이 가능하여야 함
- 정규 학점이 인정되는 강좌 개설 및 30명 이상의 수강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

□ 주관대학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제출 서류

○ 공고 절차



○ 제출 서류

- 지식재산 융합교육 참여 신청서 1부
- 지식재산 융합교육 수행 계획서 5부

2 주관대학의 사업운영

□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좌 개설

가. 강좌 개설

- 강좌 개설은 주관대학 자율에 의해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개설·운영
- 정규학점이 인정되는 강좌를 개설·운영
- 세부 교육내용은 주관대학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주관 부처의 장이 정책적으로 교과내용을 지정 또는 요구할 경우 해당 교육내용을 협의하여 운영

나. 수강생 모집

- 주관대학은 강좌 개설 후, 30명 이상 다전공 수강생을 구성·운영

□ 주관대학의 의무

가. 보고서 제출

- 주관대학은 다음의 표에 기재된 서류를 제출기한 내 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

[제출서류 및 제출기한]

구 분		제출기한
사업신청	사업신청(계획)서	공고된 제출기한 내
협약체결	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	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날
보고	중간보고서	전담기관이 지정한 날
	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역서	협약종료일 1개월 전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날
기타	추진실적보고 또는 요구자료	공문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

- 주관대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지원비를 전액 환수하고 향후 대학(원)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좌지원 신청을 제한
- 주관대학은 협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강좌에서 도출된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·기술이전 등의 성과발생 시 전담기관에 보고

나. 대응자금

- 사업비 중 주관대학이 부담하는 비용(이하 “대응자금”)은 현금 및 현물로 계상할 수 있으며,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 관리규정(민간 부담금의 산출 및 지급 등에 관한 규정)에 따라 운영
- 대응자금은 정부지원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자율 책정
- 전담교수 인건비, 연구 및 제작설비 이용료 등은 대학의 대응자금을 사용

다. 회계 관리

-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히 하기 위해 모든 거래를 발생사실에 의해 사업비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사업비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, 기획예산처 세출예산 집행 지침 등 정부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

3 사업비의 집행

- 사업비(강좌지원금) 집행 기준
 - 사업비(강좌지원금)는 비목별 제한 사항을 준수하며 집행
 - 주관대학은 책정된 지원금의 10% 범위 이내에서 예산을 조정·운영(단 10% 이상 조정해야 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 필요)

[지식재산 융합교육 사업비 집행 기준]

비목	비목별 추가 기준	제한 사항
외부 강사료	- 외부 전문강사(변리사 등)를 위촉한 경우 주관대학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, 1인당 1회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	지원금의 35% 이내
강좌보조원 인건비	- 주관대학의 규정 또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지급 -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 시 용역 참여율은 50%를 넘길 수 없음 - 강좌 보조원은 1인에 한함	
기술개발비 (재료비)	- 시작품 제작, 특허정보조사 등 기술개발 비용으로 사용	지원금의 30% 이상
국내여비	- 사업 참여자(전담교수, 참여교수 및 연구원) 및 대학(원)생의 국내 여비도 계상 가능 -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인정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* 단, 비연찬성 국내출장에 한함	지원금의 35% 이내
연구활동비	- 강좌 총괄책임자의 강좌 지도관련 비용으로 지원금의 5% 이내로 산정	
강좌운영비	- 유인물비, 기술정보수집비, 도서관헌구입비, 강좌 운영회의비 등 * 운영회의비의 경우 회의록 제출 필수, 내부 직원에게 강사료 지급 불가, 내부 장소에 장소임차료 지급 불가	

- 주관대학은 지원받은 강좌지원금에서 간접비를 공제할 수 없음
- 대응자금은 주관대학의 운영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지출

□ 사업 실적 및 계획보고

○ 운영 계획보고

-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좌운영 계획 보고 및 추진계획 공유

○ 중간보고

-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좌운영 사항 및 중간실적 보고

○ 최종결과보고

- 최종수행실적 결과보고서를 공문과 함께 한국발명진흥회 제출

□ 사업 성과평가

○ 평가 대상: 지식재산 융합교육 강좌 지원 대학

○ 평가 내용: 사업수행실적, 사업관리 및 운영현황, 사업비 진행의 적절성 등

○ 평가 방법: 사업 성과평가를 위해 ‘지식재산 융합교육 평가회’를 연 2회(5월, 9월) 개최·운영하며,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발표(구두)평가로 대체

* 평가회 개최시기는 진행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○ 평가 자료: 사업 중간실적보고 및 최종 사업수행 결과 보고서와 만족도 조사결과, 우수 운영사례 등 각종 분석 및 요청자료를 활용

□ 평가결과 환류

○ 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공개·피드백 되어 향후 개선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점검

○ 강좌 지원 종료 시점에서 대학 당 6건 이상의 지재권 출원 및 3건 이상의 시작품 제작, 융합교육 우수사례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차년도 사업 주관대학 선정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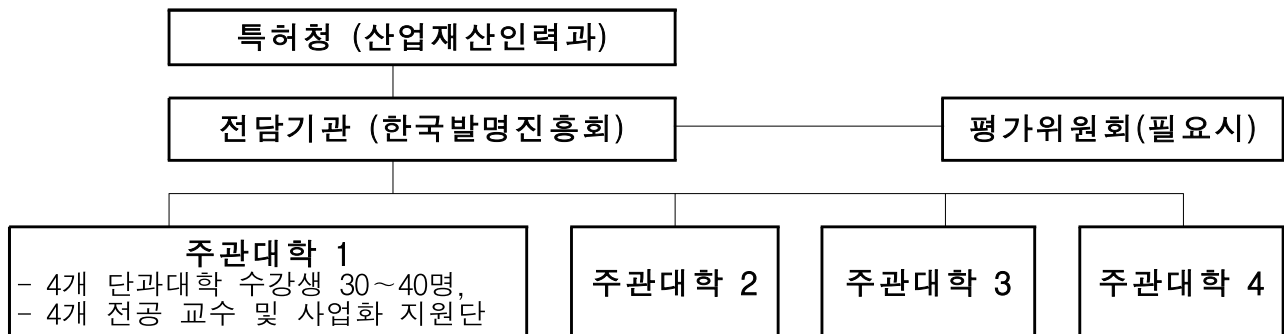
IV. 지원금 및 사업 추진체계

□ 강좌지원금 구성

항목	정부지원금	대응자금
재료비 (모형 제작)	10백만원	
특강 강사비 및 조교 인건비	10백만원	
강좌운영 및 연구활동비	10백만원	
참여교수 인건비, 교육장 및 제작설비 이용료		대 학 자 율
총계	30백만원	

□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【추진 체계】



【추진 절차】



V. 추진 일정(안)

수행대학 선정	4개 대학 선정 완료	'13. 12
↓		
수행계획서 검토	수행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최종계획서 접수	'13. 12
↓		
사업협약	주관대학-전담기관 간 사업협약 체결	'14. 1
↓		
운영계획 보고	지식재산 융합교육 강좌운영 계획 보고	'14. 2
↓		
지원금 지급	강좌운영 지원금 지급	'14. 3
↓		
강좌 모니터링	강좌진행 및 강의 참관	'14. 3~7
↓		
중간평가	중간평가회 실시	'14. 5
↓		
최종평가	최종평가회 실시	'14. 9
↓		
최종보고서	최종보고서 작성	'14. 10
↓		
정산 완료	사업비 집행내역 점검, 정산 완료	'14. 10